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17 선고 2014가단102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5. 3. 20.

판결 선고2015. 4. 17.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5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150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3. 16.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 2001. 10. 21.경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망 E과 자녀들인 원고, A, F, G, H 및 망 I(1994. 9. 14. 사망)의 처자인 피고들이 망 D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고, 망 E이 2009. 3. 15.경 사망하면서 결국 원고 및 피고들이 그 상속지분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재차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지분	5/30	5/30	5/30	5/30	5/30	6/75	4/75
----	------	------	------	------	------	------	------

나. 원고는 망 E이 사망한 직후인 2009. 3. 16.경 망 E의 장례식장에서 G, J, F, H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전북 고창군 K 답 약 1,600평, 같은 리 가옥(조립식) 1동(대지 포함)은 원고(장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함.
2. 광명시 L빌라 B동 2호는 J(장녀)에게 주기로 함.
3. 전북 고창군 M 전 606㎡ 받은 차자 G에게 주기로 함.
4. F, H은 어머니 출상 후 남은 금액을 처리할 것.

다. J은 원고, F, G, H 및 피고들을 상대로 광명시 L 지상 다세대주택 지하층 2호에 관하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16469,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10나20102)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중 J은 2010. 11. 19.경 원고, F으로부터, 2009. 12. 말경 H으로부터, 2010. 1.경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그중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합의서(갑 제3호증의 5)를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2009. 3. 15.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가. 별지와 같은 아버지 명의의 전북 고창군 K의 전답과 집을 큰아들인 원고가 상속하고,

나. 광명시 L빌라 B동 2호는 J이 상속하고,

다. 전북 고창군 M 전 606㎡는 G이 상속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상속인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합니다.

[별지]

1. 전북 고창군 N 대 559㎡

2. 전북 고창군 O 답 5,728.5㎡

3. 전북 고창군 P 임야 301㎡

4. 전북 고창군 Q 임야 553㎡

마. 원고는 G, J, F, H,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469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G, J, F, H은 각 13/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6/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4/7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0.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들 등의 지분이 착오로 상속지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기835호로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라1735호로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50 지분(= 상속지분 3/30 - 위 확정판결상 지분 6/75)에 관하여, 피고 C은 2/150 지분(= 상속지분 2/30 - 위 확정판결상 지분 4/75)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2010. 1.경 상속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 지분은 딸인 피고 C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피고 C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미성년자로서,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은 피고 C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위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무효라고 주장한다.

협약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고, 이후 피고 C이 미성년자였는데도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위 피고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위 분할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미성년자인 피고 C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 이 사건 분할협약에 대한 추진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 등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승소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 C은 위 소송이 제기되고 선고될 당시 이미 성년자였던 점, 피고 C이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성년이 된 후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약을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동현

별지